

2026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사업 안산시 청년큐브 「1:1 창업멘토링 지원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안산시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에서는 안산시 (예비)창업자와 청년큐브 입주기업(팀)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배 창업자 및 각 분야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6년 03월 18일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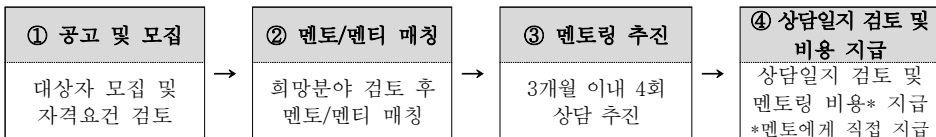
1. 사업개요

- 사업 명: 2026년 청년큐브 1:1 창업멘토링 지원
- 모집기간: 2026.03.18. ~ 예산 소진 시
- 지원대상: 청년큐브 입주/졸업기업(초지, 예대, 한양, 율피) 및 관내 창업기업,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 예비창업자 등 관내 *39세 이하 청년창업자
*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(1986.3.19. 이후 출생자)
- 지원규모: 20개사(팀) 내외 / 100만원(멘토링 총 4회)
- 세부지원내용

| 항목 | 지원인원 | 횟수 | 멘토링 분야 |
|----------|--------|----|--|
| 청년큐브 멘토링 | 20개사/팀 | 4회 | - (중소기업) 창업 및 기업성장 노하우, 사업다각화 방안 등 - (컨설팅기관) 비즈니스 모델과 아이템 발굴, 브랜드 기획, 창업사업계획 - (VC, 투자기관) 외부 투자유치 방안 - (정부기관, 대학교) 정부사업 등 정부지원방안 - (마케팅기업, 전문가) 창업 초기 마케팅 방안 - (유통/무역기업) 해외시장 진출, 무역 - (법무사, 세무사) 창업 관련 법률, 세무, 회계 - (창업보육기관) BI 졸업 후 창업기업 성장 지원 방안 |

* 기업부담금 없음, 주관기관에서 멘토에게 비용 직접 지급

2. 추진절차



3. 신청자격

- 청년큐브 입주/졸업기업(초지, 예대, 한양, 율피) 및 관내 창업기업, 관내 대학 및 고등학교 예비 창업자 등 관내 *39세 이하 청년창업자
* 공고일 기준 39세 이하인 자(1986.3.19. 이후 출생자)
- *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(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일)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
- *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일 경우, 모두 청년에 해당하여야 함

4. 제외대상

- 국세, 지방세 체납업체(신청접수 시 확인)
-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신청제품의 내용이 사업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
- 기타 주관기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5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- 신청방법
 - 신청기간: 2026.03.18. ~ 예산 소진 시까지
 - 신청방법: 신청서류 이메일 제출(yb0626@gtp.or.kr)
- 제출서류

| 구분 | 목록 | | |
|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공통서류 | ① 멘토링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신청양식) 각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(신청양식) 1부 ③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④ 대표자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) * 39세 이하 청년자격 요건 확인용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) | | |
| 사업자 별 제출서류 | | | |
| 예비창업자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 |
| ⑤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| ⑤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| ⑤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 ⑥ 법인등기부등본 | |

*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('26.03.18.)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함

6. 유의사항

- 제출시 유의사항
 -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(기업)의 책임으로,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 - 제출된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모든 지원혜택이 취소 및 환수됨
 -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업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
 - 특별한 사유서 제출 없이 과제기간(선정일로부터 3개월) 종료 후 2주일 이내 지원금 지급 서류 미제출 시 과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
 - 참여기업의 과제 포기 시 잔여 사업기간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순위 기업을 추가 선정 및 지원할 수 있음

7. 기타사항

- 선정자의 의무
 -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 - 선정자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 - 선정기업은 사업추진 후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8. 문의처

- 청년큐브 운영실 031-487-9972

붙임 신청서 등 관련양식 각 1부. 끝.